

조례 제정을 통한 지역의 지속가능성 향상 프로젝트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



2015년 6월 3일 오전 11시 경기도 의정부시에는 낯선 사람들이 모여 들고 있었다. 그 중에는 낯익은 얼굴도 보이기 시작하였다. 남경필 경기도지사, 이기우 사회통합부지사가 경기도 따복공동체 지원센터 개소식에 참석하기 위해 차에서 내리는 모습도 보였다. 개소식 무대에서는 신남균 사무처장이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이하 푸른경기21)를 대표해서 따복공동체 사업에 공이 있다 하여 표창장을 받는 등 의제 식구들은 감회가 남달랐다. 제3차 경기의제로 마을의제를 만들고 난 이후 그 성과가 빛을 발하는 순간이기 때문이었다.

경기도 남경필 지사의 대표 공약, 경기도 따복공동체 지원 사업은 어떻게 탄생하게 되었을까?

따복공동체 지원 사업은 2015년도 사업비만 해도 약 50억 원이며, 2016년부터는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 사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

주 소 16444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1
경기도청 제2별관 206호

전 화 031-8008-4248

팩 스 031-8008-4249

이메일 ggag@hanmil.net



업의 사업비는 경기도 마을만들기 지원조례(경기도 따뜻하고 복된 공동체 만들기 지원에 관한 조례로 조례명 변경)에 근거하며 이 조례를 만들게 된 것은 바로 푸른경기21의 마을의제가 있었기에 가능하였다. 푸른경기21이 성과 있는 사업을 진행해오면서 느꼈던 의문과 한계는 좋은 사업이지만 같은 사업을 오래 한다는 데에 대한 부담이었다. 담당자나 부서의 사업 기류가 바뀔 때마다 “이거 말고 좀 더 참신하고 새로운 사업은 없나요?”란 질문에 시달리는 것이었다.

도로를 비롯한 SOC(사회간접자본: Social Overhead Capital)사업은 왜 이것을 매년 하여야 하고 참신한 사업을 내놓으라는 질문은 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장기 계획과 법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좋은 사업이고 성과가 나는 사업이 조례(법)에 근거하여 추진하게 된다면 더 지속적이고 사업을 추진하는 데 불필요한 논란이 없어질 것이라는 점이 푸른경기21의 판단이었다.



상기와 같은 이유로 푸른경기21은 지속적으로 해야 할 사업에 대해서 아래와 같은 원칙으로 조례를 추진하였다.

- 지방의제21 및 지역 시민사회 단체가 진행한 사업 중 성과가 지속적이며 정책으로 추진하여야 할 사업을 구분하여 법적인 근거를 갖도록 조례 제정 작업을 수행
- 일시적인 행사성 사업이 아닌 지역의 지속가능성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야 하며,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수립한 의제 중에서 지역의 요구를 반영하고, 지역 주민이 직접 참여하며, 구체적이고 실증적으로 검증이 가능한 사업에 대한 조례 제정을 우선적으로 추진
- 조례 제정 시 의회 및 행정과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진행하여야 하며, 조례 제정 후 행정에서 예산이 어떻게 반영되고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한 분명한 계획이 있어야 조례 추진이 성공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아래와 같은 주요 조례들을 푸른경기21에서 주도적으로 만들어 가는 데 관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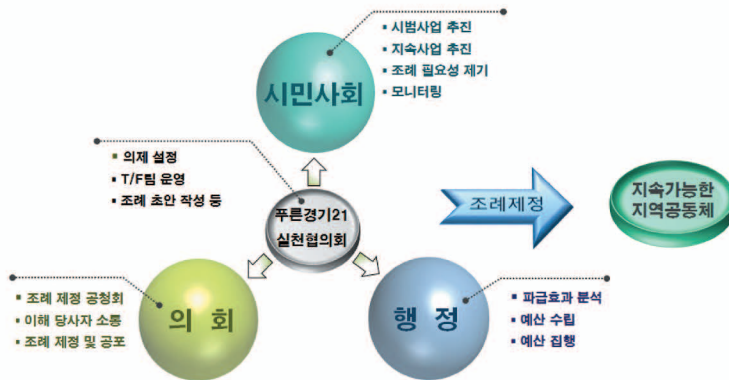
조례명	최초 제정일	비고
경기도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2006-12-26 조례 제3576호	
경기도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	2012-04-06 조례 제4350호	
경기도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2012-08-01 조례 제4433호	
경기도 도시농업활성화 지원 조례	2011-05-03 조례 제4194호	
경기도 지속가능발전 조례	2013-11-06 조례 제4623호	
경기도 생물다양성 보존 및 이용에 관한 조례	2014-01-10 조례 제4655호	
경기도 유니버설디자인 기본조례	2013-11-11 조례 제4639호	

조례를 추진할 때에는 단계별로 아래와 같은 방법을 통해 진행하였다.

- 1단계: 시범 사업을 통한 필요성 확인 및 평가
 기획회의를 통하여 사업을 구상한 시범사업 및 기획 사업 시행으로 의제의 필요성 및 성과를 구체적으로 확인
- 2단계: 조례 추진을 위한 팀 구성
 사업성과를 충분히 확인하고 조례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면 협의회와 의회 및 유관 단체가 연합하여 T/F팀을 구성하고, 회의를 거쳐 조례(안) 작성을 위한 사전 작업 및 조례 추진을 위한 회의(발의자 선정, 사업 전략 등)를 진행
- 3단계: 조례(안) 작성 및 의견 수렴
 법적인 추진은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반드시 수반되므로 이를 대비한 이해당사자를 포함하는 공청회 및 각계 의견 수렴의 절차를 거쳐 조례(안)를 작성
- 4단계: 조례 제정 및 예산 반영
 조례 제정은 끝이 아닌 시작임. 예산을 수반하지 않는 조례안은 의미가 없으므로 조례에 따른 예산이 반영되도록 행정 협의 작업 진행
- 5단계: 예산 집행 현황 모니터링, 확산 유도
 예산 수립이 꾸준히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의회 모니터링 및 타·시도 확산을 위한 간담회, 토론회 등 추진



경기도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 제정 민관협력 토론회



푸른경기21은 철저하게 분업화된 방식을 통하여 조례 작업을 추진하였다. 예를 들면, 녹색구매를 추진하는 시민사회와의 여러 협력 사업을 통하여 녹색구매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고자 의회와의 협력을 통하여 녹색구매 지원조례를 제정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현재까지도 매년 녹색구매율에 대한 모니터링과 시상을 해오고 있다.

평가와 과제

푸른경기21이 조례 추진을 한 사업은 아래 표와 같이 가치적인 성과를 거두었으며, 조례에 근거하여 사업비까지 확보하였다. 푸른경기21이라는 거버넌스 구조에서 가능한 일이었다.

아쉬운 것은 조례가 만들어진다고 해도 행정부에서 예산을 세워주지 않는다면, 이는 반쪽짜리 성과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행정은 그 관심을 예산으로 표현하는데, 아무리 법에 명시를 해도 행정에서 예산이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예산 편성을 하지 않는다면 조례를 실현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일예로

푸른경기21의 영향으로 제정된 시군 조례

시·군 조례 제정에 근거가 된 지방의제21형 조례	지방의제21형 조례를 근거로 제정된 시·군 조례
경기도 마을만들기 지원조례 (경기도 따뜻하고 복된 공동체 만들기 지원에 관한 조례로 개정(3.3))	부천시 행복한 마을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2013.04.01 조례 제2769호)
	의왕시 살기 좋은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2013.04.01 조례 제2769호)
경기도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조례	수원시 환경교육 진흥 조례 (2012.11.14 조례 제3169호)
	하남시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 (2013.06.03 조례 제1165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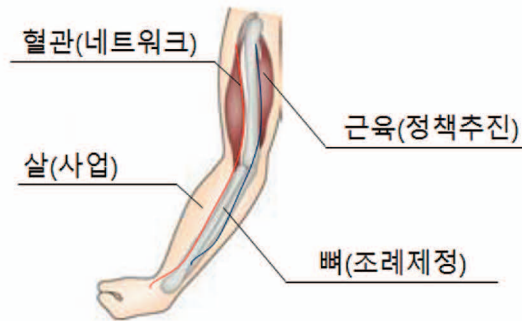
경기도지속가능평가 조례가 만들어졌지만, 아직 예산 편성이 되지 않아서 여전히 푸른경기21 자체 예산으로 평가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푸른경기21의 조례 제정 및 예산 편성 현황

조례명	예산 현황	비 고
경기도 마을만들기 지원조례	2015:약 30억원	경기도 따복공동체 지원 센터 지원 금액 사회적 지원 금액 약 20억원
경기도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조례	2014:1.5억원 2015:4.0억원	경기도청 환경교육예산 국도비 매칭 50:50
경기도 생물다양성 조례	2014:1.0억	2014 생물다양성 총회*) 시 사용

조례 제정은 뼈를 만드는 것과 같다. 조례라는 든든한 뼈대에 근육과 혈관과 살이 자리 잡아 온전한 몸을 이루듯 앞으로 지방 의제21에서 진행되는 모든 사업은 지속가능성 향상이라는 대전제 아래 사업 자체를 지속가능하게 만들어야 하며 조례 제정은 목표가 아닌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최소한의 성과이다.

지방의제21은 앞으로도 이러한 방식으로의 사업 방식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러한 사업 방식으로만이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



*) 경기도생물다양성조례제정 후 2014년「제12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 : 평창」관련 예산 집행